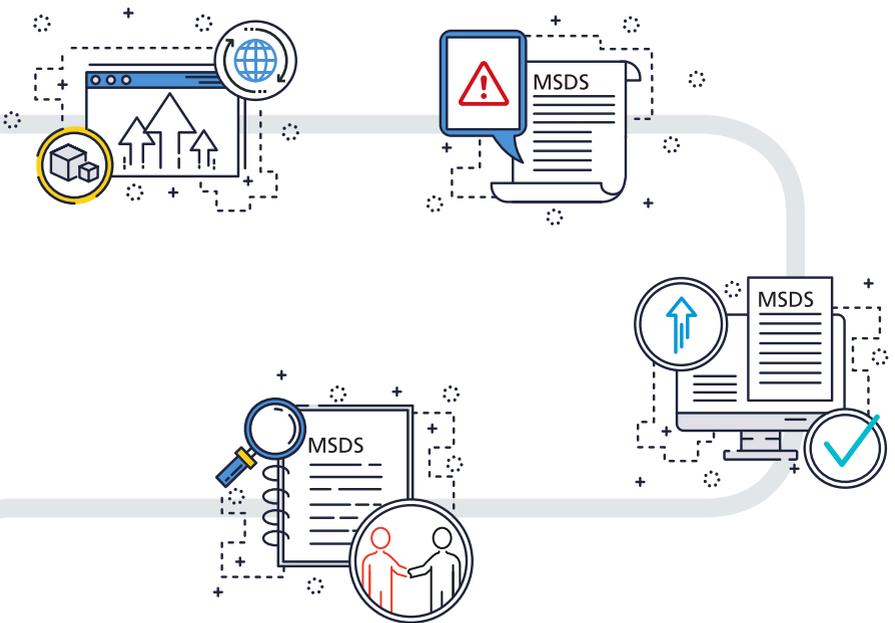


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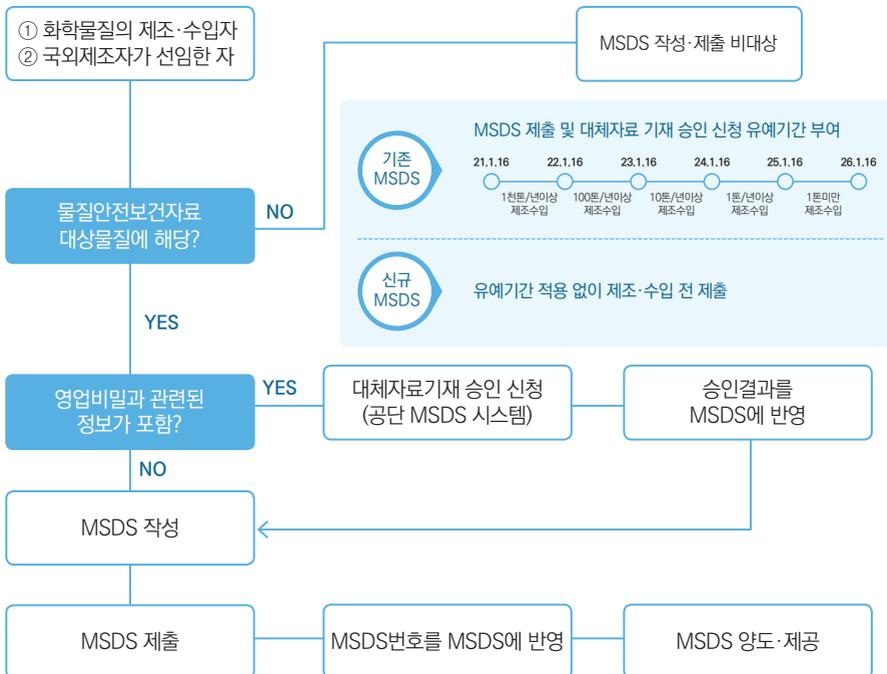
물질안전보건자료(MSDS. Material Safety Data Sheets)

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정보, 응급조치 요령,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?

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(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),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[법적근거]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(유해인자의 분류기준) 및 시행규칙 별표18 참고

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절차



※ 단, 연구개발용 물질의 경우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작성 및 대체자료기재 승인 신청은 해야함

21.1.16 ~ 무엇이 달라지는가?

1. MSDS 작성주체와 기재항목이 변경됩니다.

1-1. MSDS 작성 주체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
MSDS 작성주체	대상화학물질 양도·제공자	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·수입자 ②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

1-2. MSDS 구성성분 및 함유량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
MSDS 기재항목	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	구성성분 중 유해·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

※ 개정 후에도 기존처럼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해도 무방

2. 작성한 MSDS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
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·수입자는 제조·수입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,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내 유해·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단에 함께 제출 ⇨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※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.

3.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(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)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 싶은 경우, 별도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(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)을 기재하려는 경우 “비공개 승인신청서”를 공단에 작성·제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(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)로 그 결과를 MSDS에 반영

⇨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4. 국외제조자가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, 국내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
⇨ 선임된 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MSDS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관련 법적 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~113조

제1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) | 제112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)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| 제113조(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)

*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30호 「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



“
**물질안전보건자료를
제출해야 합니다!**
”



01 MSDS 제출

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·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
02 MSDS 제출 주체

1.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
2.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

03 제출서류 목록

1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2.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(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)
※ 다만,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62호 서식] “화학물질 확인 서류”로 대신하여 제출

0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

[법적근거] 산업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

1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
2.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(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)
3. 독성·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

- ① 양도·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(다만, 해당 혼합물을 양도·제공하거나 연구·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)
- ②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(다만,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)

4. 연구·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

※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은 해야함

연구·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인 경우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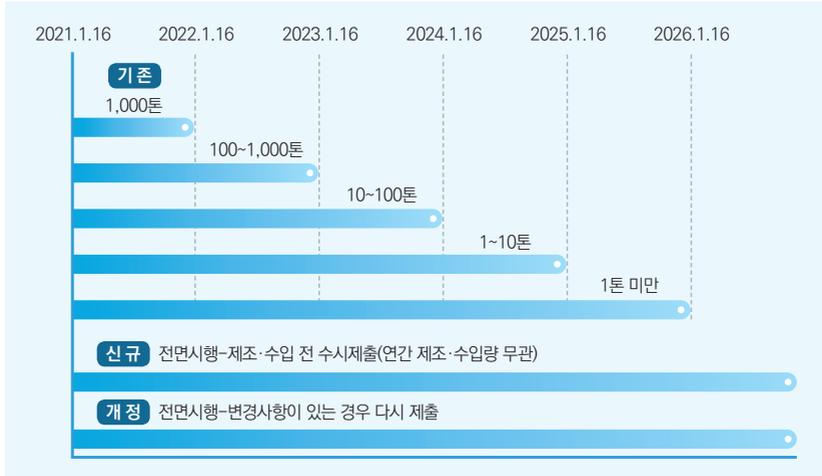
-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·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
-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
- ③ 생산 공정을 개선·개발하기 위한 경우
- 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
- ⑤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

05 MSDS 제출하는 방법은?

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,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(이하“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”)을 통하여 제출가능

주소 : <http://msds.kosha.or.kr>

06 MSDS 제출 시기



1. 기존 작성 MSDS 경우
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간 제조·수입량 별로 시행 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
 [법적근거] 산안법(법률 제16272호) 부칙 제7조~제9조, 산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~제11조
2. 신규 작성 MSDS 경우
 '21.1.16~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
3.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,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

- ① 제품명(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)
-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(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)
- ③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, 물리적 위험성

07 MSDS 제출 시 주의사항

1. MSDS에는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.
2.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, 먼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한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.
3. MSDS 제출 시, 제품명, 제조자/공급자 정보, MSDS제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[참고사항]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30호 <별표5>용도분류체계 참고

08 MSDS 양도·제공 시 주의사항

1. MSDS를 양도·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.
2. MSDS 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·제공 가능합니다.





“ 영업비밀, 이제는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! ”



01 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

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(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)을 대체자료(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)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 서식]의 “비공개 승인신청서”를 공단에 작성·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하여야 합니다.

* 사전 승인 시 ① 비공개 타당성 ② 대체자료의 적합성 ③ MSDS의 적정성 확인

02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자

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 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자

03 제출서류 목록

산안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서식]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

- ① 「부정경쟁방지법」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
- ② 대체자료
- ③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,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, 물리적 위험성 정보
- ④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- ⑤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
- ⑥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
※ 연구·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,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① 및 ⑥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가능

3-1.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란?

[법적근거]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30호 「화학물질의분류·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기준」

가. 비공지성

- 1)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범위
- 2)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

나. 비밀관리성

- 1)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·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(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,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,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,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 환경 마련 등 포함)
- 2)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

다. 경제적 유용성

- 1)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
- 2)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제조·수입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

3-2. 대체자료란?

가. 대체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

환경부 고시 「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의 별표를 준용

※ 화학식과 구조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

나. 대체함유량의 적정 기재범위

- ①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% 이상인 경우 ±20퍼센트포인트(%P)
- ②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% 미만인 경우 ±10퍼센트포인트(%P)

04 MSDS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

[법적근거]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-130호 「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」 제16조(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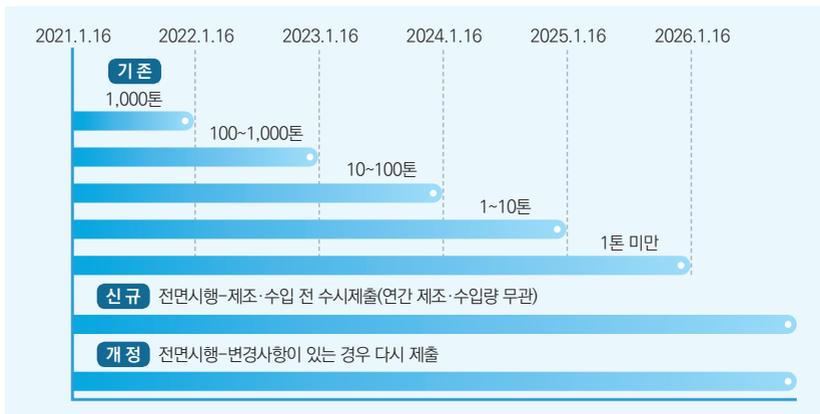
- ① 산안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급금지물질
- ② 산안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
- ③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
- ④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
- 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
- ⑥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

05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방법은?

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신청가능
주소 : <http://msds.kosha.or.kr>

06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시기

MSDS 제출 전
MSDS 제출 시기와 동일하나,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상에 대체자료로 기재 가능



07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처리 절차



08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시 주의사항

1.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.
2.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안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] 연장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3. 승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,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되어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.
4. 승인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.

09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



1. 신청인은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,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안법 시행규칙 [별지 제65호]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3.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승인 여부가 재결정됩니다.
4.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,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.



10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

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10-1. 대체자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

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·수입자

10-2. 대체자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

-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
-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
- ③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할 때

※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

- ① 근로자를 진료하는 「의료법」제2조에 따른 의사
- ②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
- ③ 산업보건의
- ④ 근로자대표
- ⑤ 산안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
- ⑥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



“ 국외제조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”



MSDS, 구성성분 정보,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,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출하고 싶은 경우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01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조건

1. 대한민국 국민
2. 대한민국 내에 주소(법인인 경우 그 소재지를 의미)를 가진 자

0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수행 가능 업무

1. MSDS 작성·제출
2. 산안법 시행규칙 [별지 제62호서식]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제출
3.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, 이의신청 등

0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의무사항

1.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, 해임된 사실을 관할노동청(지청)에 신고하고 산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69호서식]의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
※ 신고 시 (시행규칙 별지 제68호)와 함께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 및 선임, 해임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

※ 관할노동청(지청)확인 : 고용노동부민원마당 > 민원정보 > 관할관서찾기 >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

https://minwon.moel.go.kr/minwon2008/search/search_typeB.do

[신고증 발급 처리절차]



2.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.
3.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4. 그 외 선임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


관련 홍보자료 찾아보기

'21.1.16부터 시행되는 MSDS 제도와 관련된 리플릿 및 동영상은 공단 화학물질 정보 홈페이지 → 공지사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
포털사이트에 "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" 입력 → HOME > 게시판 > 공지사항 클릭 → 관련자료 확인
MSDS제도 관련 문의 : 042-869-0319



